

-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373
-----------	-----

2011년 6월 29일  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6월 13일, 신승호·문종철 의원 외 30명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5일
- 다. 상정일자
  -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1.6.29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문종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현재 지정된 업체의 경우 대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,
-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,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자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장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기간 및 지정방법을 정함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대행자 지정 평가기준을 정함(안 제5조)
-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(안 제6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안석수)

#### 가. 개요

- 동 조례제정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,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장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#### ■ 조례 주요내용

- 목적 : 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(안 제1조)
- 대행자의 지정기간 : 5년 이내(안 제3조)
- 대행자의 지정방법 :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(안 제4조)
- 대행자지정 평가기준 : 사업계획서, 번호판발급 수수료, 이용자의 편의성,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등(안 제5조)
-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: 대행자지정 관련 사항 심의·의결(안 제6조)
-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대행자의 변경 및 대행자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시행일 : 2011. 10. 1부터 시행(부칙 제1조)
- 경과조치 :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현 대행자를 대행자로 함(부칙 제2조)

#### ■ 「자동차관리법」 (2009.12.29 개정)

제20조(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(이하 "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"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나. 검토의견

- 현재 서울시에 2개 업체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되어 구역별로 번호판 등록을 대행하고 있으나, 대행기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2개 업체가 각각 24년, 37년간 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계속 유지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

■ 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현황

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지정일자	담당구역	대행가격
이창기업(주)	김용원	송파구 오금동 49-7	'74.9.10	동부지역 (종로구 등 15개구)	대형 : 8,800원 중형 : 7,600원
향우실업(주)	임환복	강서구 마곡동 14-1	'87.4.29	서부지역 (용산구 등 10개구)	소형 : 2,900원

○ 이러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의 독점운영은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시민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고, 특정업체의 장기간 운영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촉구한바 있다는 측면에서,

동 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을 정하는 것은 시민편익 제고와 특혜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

또한, 조례 시행후 3년간은 기존사업자가 대행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존사업자에게는 대행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기간을, 신규 사업자에게는 충분한 대행업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(2010.12)

〈 주요 권고사항 〉

- 국민의 부담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것을 권고(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)
-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결격사유 기준 마련 권고(자동차관리법 개정)
- 번호판 발급수수료 책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시·도지사에게 인가받을 수 있도록 권고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(안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 규칙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·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대행자 지정”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대행자의 지정기간)** 대행자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**제4조(대행자의 지정방법)**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대행자지정 평가기준)** ① 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계획서
  2. 번호판발급 수수료
  3. 이용자의 편의성
  4.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
 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의한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조(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)** ① 시장은 대행자지정을 위한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3. 대행자지정 업체수와 사업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교통전문가,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이하 “시의원”이라 한다)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,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대행자지정을 위한 공고)** ① 시장은 새로운 대행자 지정을 위해 기존에 운영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 11개월 전까지 대행자 선정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사항 등을 포함한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대행자를 지정한 후 대행자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대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**제8조(대행자의 지정 등)** ①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.

② 시장은 선정된 자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대행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.

③ 시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행자의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기존의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대행자의 변경 등)** ① 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②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

2. 법인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

**제10조(대행자지정의 취소 등)**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. 10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자로 본다.